



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

1. 관련

- 가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(보험급여과-2933호, '22.5.31.)
- 나. 「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」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3782호, '22.7.26.)
- 다.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(보험급여과-4853호, '22.9.29.)
- 라.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(보험급여과-5881호, '22.11.28.)
- 마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(보험급여과-6094호, '22.12.9.)
- 바.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2월) (보험급여과-480호, '23.1.30.)
- 사.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3월) (보험급여과-971호, '23.2.27.)
- 아.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4월) (보험급여과-1552호, '23.3.29.)

2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,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 내용

-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운영 기관에도 통합 격리관리료 신규 적용
- 중증도(중환자실)·연령(만 8세 미만)에 따른 가산 종료, 단일 수가 적용

나. 대상기관

- 지정격리병상 :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(상시병상) 운영 기관
 - * 상시병상 :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, 긴급치료병상
 - ** 수가코드 신설 적용 : AH096, AH097, AH098
- 일반격리병상 :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정신병원
 - * 수가코드 적용기간 연장 : AH172, AH174, AH176, AH137, AH054

다. 적용기간 : 2023.4.1.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

- * 지정격리병상은 2023.4.13.부터 청구 가능

붙임 1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(지정격리병상) 1부.
 2. 「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」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(일반격리병상)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기초의료보장과장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강원도지사, 대전광역시장, 충청북도지사, 울산광역시장, 충청남도지사, 경기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

주무관

박혜진

보건사무관

배운영

보험급여과장

전결 03/29

정성훈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1553 2023.03.29. 접수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eilenpark127@korea.kr
전화 044-202-2743 전송 044-202-3937 / eilenpark127@korea.kr / 공개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